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9.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등 연가와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 개정

- 재직기간 확대 : 2년 미만 → 5년 미만(안 제13조의2)
- 가산 연가일수 : 2일 → 3일(안 별표 3)

나.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범위 안에서 수당 수령과 연가 전환 중 선택 사용 가능 신설(안 제14조의2)

-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에서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8조)

- 만 나이 사용 및 정착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라. 특별휴가 확대(안 제18조)

- 장기 재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재직기간내 미사용 휴가일수를 이월하여 사용(안 제18조제11항)
- 재해, 재난, 선거사무종사 등 격려휴가 종류 확대(안 제18조제16항)

마. 다태아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4)

- (현행) 10일 → (변경) 15일

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기존 인용법령 개정, 맞춤법 오류(띄어쓰기),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11. 9. ~ 11. 15. (6일간)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직자행동**”을 “**공직자의 행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를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상근무를 무단히**”를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복직기관**”을 “**본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휘 · 감독**”을 “**지휘 · 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복직기관**”을 “**본직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를 “**국외**”로, “**유관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대통령령)을 적용한다**”를 “**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해임 · 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를 “**의장은**”으로, “**잔무처리상**”을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로, “**의장은**”을 “**해임 · 파면된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을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법 제63조제2항제4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를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된”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로, “자에”를 “공무원에”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으로,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공무수행상”을 “공무수행에”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지급하고 연가에”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개월수”를 “개월 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를 “법 제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폐직·과원”을 “폐직·과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병가일이 7일이상일”을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진단서 제출없”을 “진단서 제출 없”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기간 공가”를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5
호”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검역법」 제5조제1항”을 “「검역법」 제5
조제1항”으로, “오염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퇴게”를 “퇴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산·사산”을 “유산·사산 또
는 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만5세”를 “5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을 “공무
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14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시술 당일 에 1일의 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
항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로 하고,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의 단서조
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의1호 “재직기간 산정은 제13조제2항에
따른다”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10일(2회 분할 사용 가능)”을 “10
일”로 하고 제1호로 , 같은 항 제3호 “15일(2회 분할 사용가능)”을 “20

일”로 하고 제2호로, 같은 항 제4호 “20일(4회 분할 사용가능)”을 “20일”로 하고 제3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재직 40년 이상 : 10일”로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재직기간별 잔여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제1호 중 “휴업·휴원·휴교”를 “휴업, 휴원, 휴교”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업무(재해, 재난, 대단위 행사, 선거사무종사, 주요현안 업무 등)를 수행한 경우
3. 근로자의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9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u>자</u>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 ----- <u>사람은</u>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생략)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u>공직자행동</u> 을 준수해야 한다.	② ----- <u>공직자의 행동</u>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전시, <u>사변 또는 천재지변</u>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u>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u> ----- ----- ----- -----.
③ 당직 및 <u>비상근무를 무단히</u>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 <u>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복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9조(겸임근무) ① -----

----- 사람은 ----- 본직
기관-----.

----- 지휘·
감독-----.

② ----- 사람이 -----

----- 본직기관-----
-----.

제10조(파견근무) ① -----

----- 사람은 -----

-----.

② ----- 사
람이 -----

-----.

③ 국외-----
----- 연구기관 -----
----- 조례에

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
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
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
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의2(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파면된 공무원에 대
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의 한
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13조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연
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
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
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
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
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 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
기간

선 -----
-----을 준용한다. ----

----- 소속 공무원-----

-----.

제10조의2(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
----- 남은 업무 처리
를 위하여 -----
----- 해임·파면된 공무원을 -
-----.

제13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 휴직기간, 정직기
간, 직위해제기간 -----

-----.

1. 법 제63조제2항제4호-----

「지 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의6제2항제1호다목-----

2. (생략)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한다.

1. 2. (생략)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략)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⑤ 공무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

③ -----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

----- 공무원에 -----

-----.

1. 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
-----.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소속 공무원-----
----- 공무수행
에 ----- 없으면 -----
-----.

⑤ -----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략)

⑦ 의장은 공무원에게 제1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

-----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제13조-----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

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2. (생략)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

② -----

---. -----

----- 개월 수-----

-----.

1. 법 제63조-----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생략)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
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
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
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
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
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제16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
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
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에 따
라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의3제1항제2호-----

4. (현행과 같음)

5. -----
----- 폐직·
과원 -----

③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의10-----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병가) ① --- 소속 공무원-

-----.

----- 제15조제6항-----

-.

1. · 2. (생략)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 매 치료 때마다 별도의 진단서 제출없이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17조(공가)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1. ~ 4.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 9.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소속 공무원-----

-----.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
-----.

----- 진단서 제출 없-----
-----.

제17조(공가) ----- 소속 공무원-----

-----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7. ~ 9. (현행과 같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18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1. 「검역법」 제5조제1항-----

-----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제18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되도록 -----
-. -----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생략)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
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
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④ (생략)

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
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
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
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
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
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
를 얻을 수 있다.

⑦ ~ ⑨ (생략)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
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
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의 난자 채취일에 1일

1. (현행과 같음)

2. -----
----- 40세 -----

3. ----- 유산·사산
또는 조산-----

③·④ (현행과 같음)

⑤ 5세 -----

-----.

⑥ -----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지
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
항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
<단서 삭제>

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⑪ 의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 산정은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2. 재직 10년이상 20년 미만 : 10일
(2회 분할 사용 가능)

3. 재직 20년이상 30년 미만 : 15일
(3회 분할 사용가능)

4. 재직 30년 이상 : 20일(4회 분할 사용가능)

<신 설>

5. 재직기간별 잔여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⑫ · ⑬ (생 략)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

⑪ -----
-----.
-----.

<삭 제>

1. ----- 10일

2. ----- 20일

3. ----- 20일

4. 재직 40년 이상 : 10일

5.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⑫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u>휴업 · 휴원 · 휴교</u>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 4. (생 략) ⑮ (생 략) ⑯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u>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 업무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u> 2. (생 략) <u><신 설></u>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u>조례</u>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u><신 설></u> <u>제20조</u> (생 략)	----- ----- <u>휴업, 휴원, 휴교</u> ----- ----- ----- 2. ~ 4.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⑯ ----- -----. 1. <u>주요업무(재해, 재난, 대단위 행사, 선거사무종사, 주요현안 업무등)를 수행한 경우</u> 2. (현행과 같음) 3. <u>근로자의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u>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 <u>조례</u>에 <u>선</u> ----- -----. <u>제20조(준용)</u>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u>제21조</u> (현행 제20조와 같음)
--	--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3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별표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8조 제1항과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u>	<u>1일</u>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u>탈상</u>	<u>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u>	<u>1일</u>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
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
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
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
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